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19일, 서미화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2.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2.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미화 의원)

최근 해외직구 온라인몰을 이용한 화장품의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반입되고 있음.

반면,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해 위해정보 게시, 반입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의 지정,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준하여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해 유통단계부터 위해화장품 반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개정안은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직접구매 화장품”을 정의하고,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한 검사,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화장품의 직접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식약처는 현행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수거·검사를 통해 품질과 안전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를 파악하면서,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거나 관세청에 통관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있음.
- 그런데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은 국내에서 생산·제조되어 유통되는 화장품과 공급구조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구매 화장품”을 정의하고 안전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됨.

- 다만, 개정안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을 “직접구매 화장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해당 용어에는 “해외”의 의미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관련 자료나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조화·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실태조사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등에 대한 법정형으로는 다소 무거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정보의 내용 및 성격, 다른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법정형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선우 의원)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